

# 기술사 계속교육 (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)



강영주 편집위원회 위원  
광림구조이엔지(주), 대표이사

## 기술사 계속교육 (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) Q&A

### 기술사 계속교육 이란?

- 2007년 1월 26일 개정 공포(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-48호)된 기술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기술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, 국내기술사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. 따라서, 우리회원들은 매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

### 접수 및 교육관리 : 한국기술사회

### 교육진행 :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

### 교육훈련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-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技術士 (자격증 취득 1년 후부터)

### 어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나요?

#### 필수 수강교육 (교육훈련 : 24학점)

- 전문교육(필수 12학점) : 한국기술사회 상설교육원에서 이수 가능

- 기본교육(필수 12학점) : 한국기술사회 상설교육원에서 이수 가능

#### 지율학습활동 (교육훈련 : 66학점) : 직원교육, 강의, 우리회 회지 원고집필, 현장견학 등으로 이수 가능

### 우리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?

- 전문교육은 우리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및 강습회를 통해 이수 가능토록 협의 진행중

### 지율학습활동 외 학점인정은 없나요?

-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+ 기술사 경력신고서(11호서식)작성 후 한국기술사회로 제출 시(등기로) 36학점 이수 인정

2007년 1월 26일 개정 공포(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-48호)된 기술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기술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, 국내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.

따라서, 우리회원들은 매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관리해야 할 기술사 계속교육(CPD)의 세부사항을 요약하면

- 2007.07.27 이전회원은 2007.07.27 이후 3년마다 매 90 학점
- 필수 수강교육 (교육훈련 : 24학점 필수)
  - 기본교육(12학점) : 한국기술사회 상설교육원 이수 가능
  - 전문교육(12학점) : 한국기술사회 상설교육원 이수 가능
- 자율학습활동 (교육훈련 : 66학점)
  - 수습기술자(직원) 기술지도(36시간), 논문집필(60시간), 강의(60시간), 특허출원(60시간)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
-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+ 기술사 경력신고서(11호서식) 작성 후 한국기술사회로 제출시(등기로) 36학점 이수
  - 학회, 세미나 참석 시 확인증 수령 (추후 학점 이수 인정)
  - 기술사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100만원부과 (기술사법 제22조)

## 1. 기술사 계속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

### 1.1 필요성

국내외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자의 능력과 자질향상, 즉 기술자의 전문적인 실무분야에 대한 지식, 일반적인 지식 및 기술적인 응용능력에 대해서 투명성, 국제적인 동등성, 적합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면서, 기술사의 전문성을 기술사계속교육(CPD)를 통해 높여가는데 필요성이 있다.

### 1.2 목적

- 1) 경쟁력 있는 기술사의 육성
- 2) 윤리관이 있는 기술사의 육성
- 3) 국제성이 있는 기술사의 육성
- 4) 기술사의 책무성 확보

## 2. 교육 대상 및 이수학점(인정기준)

### 1.1 교육훈련 대상

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技術士 (자격증 취득 1년 후부터)

#### ※ 교육면제 대상

- ①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술사
- ②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교육 불가 사유를 소명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술사

### 1.2 이수학점(매 3년마다 90학점 이수)

3년 이상 기술사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술사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미리 45학점 이수

### 1.3 교육훈련의 인정기준

90학점중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수강교육 각각 12학점 이상 필수

## 3. 교육훈련의 종류

### 3.1 수강교육

- 기본교육 :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, 윤리, 환경, 안전, 기술·사회 및 경제의 동향, 사업관리, 국제규격·기준,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, 국제계약, 외국어 등 의 교육

- 전문교육 :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
### 3.2 자율학습활동

- 논문집필, 강의,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

### 3.3 교육훈련의 종류·내용 및 인정기준(제13조제2항 관련)

※ p.58 표참조

## 4. 기술사 교육훈련(CPD)관련 법령

### 4.1 기술사법 제5조의3 (기술사의 교육훈련)

-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·향상시키고,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,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

구분	교육훈련의 종류	인정사항		가중치	단위	인정최고학점
수강 교육	(A01) 교육기관교육	(A0101) 「기술사법시 행령」 제14조에 따른 교육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	국내외 최첨단 기술 세미나, 심포지엄, 포럼 등	5~20	1건	90
	(A02) 법정직무교육	(A021)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	일반적인 기본교육, 전문교육	1	수강시간	
	(A03) 대학전공교육	(A301) 국내외 석사, 박사 학위 과정		10	취득학점	60
	(A04) 그 밖의 수강교육	(A401) 국내외 단체나 업체에서 실시한 기술관련 교육		0.6	수강시간	18
자율 학습 활동	(B01) 논문 등의 발표 및 저서 등의 집필	(B0101) 기술사회, 학회, 협회, 민간단체, 기업 등이 개최하는 기술논문 발표회, 연구회, 강연회, 심포지엄, 토론회 등에서의 발표		10~60	1편	60
		(B0201) 기술사회, 학회, 협회, 민간단체, 기업 등이 개최하는 기술 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		10~50	1편	48
		(B103) 기술도서의 집필(번역서를 포함한다)		50	1편	60
	(B02) 연수 등의 강사	B(0201) 기술사회, 학회, 협회, 대학, 민간단체, 기업 등에서 개최하는 연수, 강연, 기술설명회 등의 강사 등(기술사 수강교육 강사로서의 참가를 포함한다)		2	강의시간	60
	B(03) 기업(연구기관)내 연수 및 OJT(on the job training)	(B0301) 기업(연구기관)내 연수프로그램 및 OJT 참가		1	참석시간	12
	B(04) 기술지도	(B0401) 수습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지도 활동		3	지도시간	36
	B(05)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	(B0501) 현장신기술, 신공법제안 보고서		10~30	1편	30
		(B0502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학회, 협회, 민간단체, 기업 등의 기술업 2무수행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업무		30	1회	30
		(B0503) 국내외 특허출원(발명 및 실용신안을 포함한다)한 업무		60	1건	60
(B06) 자기주도 학습활동	(B0601) 통신교육(종료증서에 따른다)			1	수강시간	60
	(B0602) 자율학습(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			1	1건	12
	(B0603)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			0.6	참여시간	18
(B07) 업무활동	(B0701) 기업(연구기관) 등에서의 해당 직무범위와 관련한 기술업무, 연구개발 등			2	참여기간 (1개월)	36
(B08) 그 밖의 자율학습 활동	(B0801) 기술관련 심의 및 심사활동			1	투여시간	30
	(B0802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			20	1회	24
	(B0803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이 심의회, 연구회 등의 위원, 학회 및 협회 등의 임원이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			20	1회	24
	(B0804) 그 밖의 분야에서 기술사의 계속교육(CPD)에 해당하는 것			0.6	1회	18

주어서는 아니 된다.

-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·방법·기준·절차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기술사 계속 교육 (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)

#### 4.2 기술사법시행령 제12조 (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)

- ①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(이하 “기산일”이라 한다)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기산일 이후 3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

#### 4.3 기술사법시행령 제13조 (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)

- ① 기술사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3년의 교육훈련 이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②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·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③ 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,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 시설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